

CA0027153

영구

1981 - 1981

질의회답(2)(1981년6월24일-10월28일)(2-1)



서류발행일:
2019년11월01일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본래조필

국가기록원 보관문서(운본, 광디스크, 라이브로필름)
원본으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국가기록원장

보건사회부

수급 1447-11049

(70-3723)

1981. 5. 16.

수신 법무부장관

제목 유네스코쿠폰 수입에 관한 유권질의

1. 우리나라 1961년 8월 유네스코쿠폰(이하 쿠폰이라한다) 제도에
가입하였으며 매년 정부의 낸간 책정액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처
에서 서적쿠폰, 과학기지쿠폰 및 교육영화쿠폰으로 구분하여 배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바,

2. 근간 일부 종합병원에서 의약품이 허가되는 진단용 시약을 국내
외파장을 통하여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함에 있어 약사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수입등록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갑설

○ 의약품인 진단용 시약을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코자 하는
경우 유네스코쿠폰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과 약사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득하여야 함.

○ 사유

○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특별법인 약사법에 적용
되므로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쿠폰
과 교환으로 송부되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약사법상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임.

한국현장

1955. 5. 10.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품종이 대체로 허락되는 편이라 그에 맞는 품종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그 외에는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그 외에는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이집 허가증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되는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된다.

제 555 호에 대한 청탁은 허락된다.

(55-3103)

1955. 5. 10.

한국현장

한국현장

1981. 5. 16.

나. 음식

○ 의약품인 진단용 시약의 경우에도 무역거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4항 규정에 의하여 타법령에 불구하고 자동승인품목으로 수입할 수 있음.

○ 사유

무역거래법은 무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해제는 타법령에 의한 수입허가 규제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되므로 무역거래법상 수입의 특례에 해당되는 의약품인 진단용 시약에 있어서는 약사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임.

다. 당부 의견 : "감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참고자료 1부. 끝.

보건사회부장관

국회 정부청문회에 회기여

한전결

第2編 유네스코 쿠폰 業務 關係法規按率

◎ 유네스코 쿠폰에 관한 規程(金文部正 1975. 3. 15. 令第142-621호
及 1971. 9. 14. 令第2507-22호)

第一章 通 則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유네스코 活動에 관한 事項에
대한 規定을 차라 유네스코 쿠폰(이하 "구조"이라 한다)의 計定
및 쿠폰으로 進入하는 物품에 대한 関稅契約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計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本規定 및 附則에 計定된 다른 規定에
는 제외되는 경우 本外하고는 이 規程의 事項은 本에 依한다.

第3條 (定 定) 이 規程에서 計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輸入代行商社"라 함은 유네스코 諸事務所에 有する(以下 "本
構"라 한다)社의 有する 事務所를 有하는 本構의 代行社를
是代行社는 本構의 本構이다.

2. "他商社"라 함은 輸入代行商社 以外의 本構과 有する 事務所
를 有하는 本構이다.

3. "輸入通關料"라 함은 輸入代行商社가 有する 事務所
의 通關에 所要하는 料費(通關次級手續費, 但斐律勿為 保
管料, 並非商務員 有而需繳費, 有算此 것)와 本構代行料"라

- 14 -

자 濟濟하는지 所要하는 領獎를 말한다.

4. “其他地稅”이라 칭한 日本地賦을 除外한 地稅을 말한다.

第2章 유네스코 투표 配定委員會

第4條 (設 定) 투표의 配定에 관한 事項을 設定・決定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委員會 [乃에 유네스코 투표 配定委員會] (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3章 투표配定

第12條 (투표의 種類) 투표는 유네스코 투표 (乃에 加入規定文)

따라 다음과 같이 三分한다.

1. 社會 투표

2. 行政 諸種 투표

3. 教育 外交 투표

第13條 (투표配定의 取消 또는 撤回) 獲得金額에 따라 투표를 他人에게 轉讓 또는 轉賣하였을 때에는 그 투표를 取消하나 一定한 期間을 設定하여 투표를 撤回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4條 (手續料) 투표配定에 依하여 告知하는 領獎金의 10%를 수수료로 할 수 있다. 다만, 配定手續料는 配定額의 10%를 超過할 수 없다.

第15條 (青箱 투표) ① 青箱 투표는 各級學校, 公立醫院, 教院, 科院, 文化, 弘報分野의 部門 및 公共行政과 이 分野의 人民에

제 규정한다.

② 고등학교는 학생各級에 課費하는 現金과는 使用할 수 있다.

1. 情報用(文書의)料 購入

2. 球類用(球)料 購入(體育用料 購入)

3. 地圖, 地圖集 購入

4. 約翰 및 아이크로 페인팅料 購入

Q 第16號 (高級敎育學) ① 고등학교는各級에 12공동

要施設을 設立·維持·管理·運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②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管理·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③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管理·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④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管理·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⑤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管理·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⑥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管理·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⑦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管理·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⑧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管理·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⑨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⑩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⑪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⑫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⑬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⑭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⑮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⑯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⑰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⑱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⑲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⑳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㉑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㉒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㉓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㉔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㉕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㉖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㉗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㉘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㉙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㉚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㉛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㉜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㉝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㉞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㉟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㉟ 고등학교는各級에 設立·維持·management·운営하는 責任을 지닌다.

에 있는 種類라야 한다.

1. 教育, 科學, 文化, 社會, 藝術은 通過의 教育의 成果를 指定하기 爲하여 依存된 教育缺點 第 18條 (中 論) 本條의 通過的 特權의 品의 代入은 주권으로 通过特權의 共同購入를 原則으로 하되, 特權者는 特權 必要하고 認定한 데 共同購入를 計划하고 配定받은 者가 重複 購入하는 能 수 있다.
2. 教育缺點 및 文化缺點을 作為賣給하기 위한 生活各

第4章 第一次

第19條 (中 論) 本條의 주권申請을 하고자 한 請求는 다음 各項와 같이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① 特權주권은 本條申請(別紙 第1, 2, 3호 様式)에 依する代行商社의 行物目(或는 申請內容을 證明할 수 있는 證憑書를 連用하여야 한다.

② 科學器材주권은 本條申請(別紙 第4호 様式)에 特品의 貿易를 附註하여야 한다. 다만, 代行商社가 아닌 進口의 特品의 貿易의 權을 採得하였을 場合에는 代行商社를 連用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第20條 (配定通知) 特員會에서 주권의 配定을 決定하였을 때에는 그 決定된 特項을 申請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21條 (拂 入) ① 申請者は 前條에 의한 配定通知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30일 以内에 拂入告知書(別紙 第5, 6, 7호 様式)에

然后于 1994 年 10 月 1 日起实施。根据《条例》的规定，香港特别行政区的立法机关可以就本法的实施情况和执行情况向中央人民政府提出意见和建议。中央人民政府应当认真研究并作出相应的决定。

化學工件 주는 확정을 받은 뒤에 재료의 확정과 대체로 같은 내용의
제작 과정을 주고자 한다면 아래를 참고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622. 《人》 ① 李清照 重慶市江津區 平生代 著于
1964年1月完了畢題 作於旅行中 早春廿二日人群中留影
人民行進曲譜 支那歌曲研究會

但其外支其主者則其元氣也而有天地之氣者則其自然之氣也

第二章 (社会·政治) 德文代行海陆空三军统帅并时兼海军
部长以及外事大臣兼外交大臣工部大臣兼行政大臣，被
选为帝国宰相。

第28章 〈民法·商法〉 ① 民人代行制度은 韓國民法典에 가입
하는 한 領域에 必要한 出領을 註明하여 運用된다. 這種制度은 基本上
다양한 편이다.

④ 입수 대행 범위는 화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지만, 결제 수단은 환수를 받아야 한다.

◎這類費用的總額中所要付的經費是購入代行內社外支領購入頭腦貨物的費用

第25條 (瑕疵賠償) ①輸入代行商社가 通則 또는 納品함에 있어
서 瑕疵가 있을 때에는 이를 事務處와 實需要說明의 報告하
고 이에 대한 賠償契約이 組結된 局所에서의 權益을 被害者에

०५८

- ② 「代理人(保険会社)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
生物保全」이라는 조건어야 한다.

第5章 索引

- 第22條 (支店貿易契約) 무역에依據 物品貿易契約를 基本契約
基業契約로 調入代行業의 基本契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根拠은 不可 그려하여 다니어야 한다.

① 本外賣買賣契約은 基本으로 造り, 利用하는 基本은 在一定
額으로 하는 供給契約을 結合하여야 한다.

② 本外賣買賣契約은 日本地圖(根拠) 및 保證料를 確定金
額으로 的定하여 指定이 發生하였을 時刻에는 이를 供給주체
하는 用設置料金을 運送하여야 한다.

第27條 (子店貿易契約) 무역에依據 物品貿易契約은 次의各
种包含價格(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으로 한다.

第28條 (美的金額의 表示) 무역에依據 物品貿易契約은 本契約契
約에 本의 金額은 力貨(US \$)로 表示한다.

第29條 (本外賣買賣契約基業) 무역에依據 物品貿易契約을 本契
約를 通す, 本外賣買賣契約의決定의 基本金額은 本契約 무역을
逃金, 發注하는 金額으로 한다.

第30條 (무역發注 및 逃款金額) 무역으로 發注하는 金額과 逃
款金額은 日本地圖에 있어서는 本契約價格(FOB; Free on
Board)으로, 外地把提은 通常包含價格(C&F; Cost and Freight)

▲ 第三章

- 第30條 (CIF) 貨物發送부 輸入代行商社에 支付押金·運賃各
의 부과금과 運送료는 負負, 其他稅金은 무증으로 罷免.
（但）大件貨物在該項稅金之外 還附加한 日本通關稅에 輸入
稅를 부과할 때는 10%에 따라 運費를 増額로 지어야 한다.
- 第32條 (C&F) ① 輸出地에 係金等은 輸入代行商社에 支付且
支拂부여 민트자 由內關監督署에 有拂拂도 누 하여야 한다.
② 付費險(All Risks) 및 有過境運送險(ITE, Ireland Transit Extension)은
付費으로 하여야 하며, 保
險料는 費險料、實에 適應한 額에 按하여 支拂해야 한다.
- 第33條 (運賃, 保費等의 違不足) 違欠 및 保費等의 實額、行額
에 附屬于 特定의 有名 航運에는 이를 開列하나마 한다.
- 第34條 (入札保證金) 予選에 依한 物品을 購買하기 为了入札
用 物이 100分의 2以上인 保証金
金을 保證한 基上에 付拂해야 한다.
- 第35條 (採購保證金) 予選에 依한 物品을 購買하기 为了採購
用 物이 500分의 100분의 5以上인 保証金
金을 保證한 基上에 付拂해야 한다.
- 第36條 (保證保險證書) 予選에 依한 物品을 購買하기 为了入
札參加者 또는 製造者或者가 入札 또는 買的保證金에 결음하여
保證保險證書로 代書할 수 있다.
- 第37條 (保證金上) 予選에 依한 物品을 購買하기 为了發
行을 遵循한 次選에는 遵循日數 每 1日에 대하여 買的保證金額의
1,000분의 1에 依하여는 遵循價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 20 -

◎ 외국통관리법령 (1970. 12. 15. 정부부고서 제 627 호)

제11-6조 (유니스코·우편) 유네스코 구통은 한국의 환율이 다음
날짜(의 1일에 해당하는 날짜는 위하여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이)로부터 유네스코 구통을 배당받은 자에게 대작하며 그 대
작금은 국제법 및 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금의 수단으로 정산
한다.

1. 외국인환을 수입 때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기밀행을 수입금자가 아닌 자가 평매는 목적으로 하자 아
니하는 자가 환의 외국 서적·철기인장을 기타 도서의 구입
이나 주류에 따른 대금 또는 구독료의 지급
- ✓ 2. 교육·문화·연구기관의 관리인 평목으로 하자 아니하는 자가
온 연구·설립·교육·문화·과학 기관의 수입 때는 대금의 지급

제5-3조 (수출장관별법) 1. 수출정상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5. 한국의 환은행에서 매입한 유네스코 구통을 미국에 송부함으
로써 물건의 수입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방법

◎ 貿易審査法 (昭和26年4月1日施行)

第6條 (正入の許可 또는 제3항) 貿易品을 수입 또는輸出할 때는 기관(支社) 차장은 바로 관찰서 領事, 長官의 허가 또는 허認을 얻어야 한다. 허가 또는 허認은 1회의 一회를 見渡하고자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또는 허認은 有交換關係에 관하여는 大統領으로 정한다.

③ 貿易을 수출 또는 输入하고자 하는者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또는 허認이 有效期間內에 積期前까지 그 수출 또는 输入의 申請을 하여야 하며, 그 有效期間 内에 貿出代證을 申請하거나 代理人을 指定하여야 한다.

第10條 (供給機制) ① 貿易는 由瑞典 수출 또는 输入하는 貿易를 하드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 貿易 허가 또는 输入의 貿易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 貿易를 1회에 의하여 依頼金·保證 기타의 金印을 提供하지 낼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 貿易의 수출 또는 输入이 實行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依頼金은 國庫에 存託된다. 다만, 貿出入의 依頼에 遵守할 수 있는 理由로 인하여 당해 수출 또는 输入이 實行되지 못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4條 (輸出入의 特例) 第3條 및 第6條 외지 第13항의 規定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諸國의 月令(諸國月令)이나 大小農令이 정하는 事項을
總覽 또는 総入耕고가 할 때.

○ 무역거래법 시행령(“[”] 1976. 4. 4. 令 제 2979 호)
(“[”] 1976. 7. 1. 제 2975 호)

제16조 (수입의 품목) 법 제14조에 1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니스코)에게 달당하는 유네
스코 주관의 교육으로 충부되어 반입되는 물품.

藥事法 19

休業한 製造所를 再開한 때 또는 製造管理者 기타 保健社會部令으로 강하는 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底業·休業·再開 또는 變更이 있는 날로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2條의 2 (準用) 小分業에 관하여는 第27條 대지 第32'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製造業者"를 "小分業者"로, "製造"를 "小分"으로 본다. <新設 1971. 1.
13. 法 2279>

第33條 (藥局製劑의 製造) ① 藥局開設者が 藥局製劑를 製造하거나 保健社會部長官
이 指定하는 醫療機關의 調劑室에서 製劑를 製造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製造하고자 하는 品目을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
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71. 1. 13. 法 2279>

② 制除 <1965. 4. 3. 法 1694>

③ 藥局製劑 및 調劑室製劑의 製造, 調劑室의 施設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
令으로 정한다. <改正 1971. 1. 13. 法 2279>

④ 制除 <1965. 4. 3. 法 1694>

⑤ 制除 <1965. 4. 3. 法 1694>

第2節 醫藥品등의 輸出入業

第34條 (醫藥品등의 輸出入業의 許可) ① 醫藥品등의 輸出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를
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基準에
의하여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醫藥品등을 輸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项目마다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 第1項後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이를 應用한다.

⑤ 第26條第5項 및 第6項·第27條 대지 第3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藥
品등의 輸出入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게 이를 주관한다. 이 경우에 "製造 및 生產"을
"輸出入"으로 "承認"을 "許可"로 "製造所"를 "業者"로 한다. <改正 1971. 1. 13.
法 2279>

⑥ 醫藥品등의 輸出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에 의한 所有의 許可를 받은
후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71. 1. 13. 法
2279>

第3節 醫藥品등의 販賣業

第35條 (醫藥品販賣業의 許可) ① 藥局開設者が 아니면 藥業者를 販賣하거나 販賣

3.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가 큰 의약품은 수시로 자가시험을 행하거나 결정기
제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당한 것으로 판정될 때에는 자체없이
유통중인 당해제품을 자진하여 회수하는 동시에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
할 것

4. 의약품등(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제외한다)의 용기는 당해품목으로 제조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판제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판을 사용할 것.

② 제 1 항의 경우에 화장품원료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보
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검사를 척한
원료는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자가시험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2년간 이를 보관하여
야 한다.

제17조 (의약품등의 생산설적과 수출입 실적보고) 법 제31조제 2 항 및 제34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매분기 말 현재의 그 생산 실적을 익
월 1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도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의약품등의 수출입업자는 매분기 말 현재의 그 수출입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2호의 2 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약품등의 수출입업자의 허가증) ① 법 제3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
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그 신청과 동시에 수출입업 허
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언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자 등록증의 사본
2. 제14조제 5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기술자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자
에 관한 제12조제 3 항제 4 호의 서류
3. 수출입업무를 관리하는 약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관리약사가 법 제 4 조제 2 호
· 제 3 호 · 제 5 호 또는 제 8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전단서와
그 신원증명서

4.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출입의 허가 또는 약품별 허가를 신청하
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약품등의 수출입업 허가대장과 허가증)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출입업 허가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업 허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년월일

43 약사법시행규칙

주④

2. 수출입업자의 본적·주소·성명과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과 생년월일)
3. 영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수출입업무를 관리하는 약사의 본적·주소·성명과 생년월일(수출입업자 자신이 수출입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의약품등의 수출입 허가신청)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수출신용장 사본

2. 수출대금입금증명서

3. 거래상대자가 속하는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공관장이나 그 국가의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계약서(국내에서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상대자가 속하는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장이나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배도환약서와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입상성격서와 판계문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의약품 등의 판매업

제21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제2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제

2. 법 제1조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삭제

4. 사진(신청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탐모 정면 상반신 명합판) 2매

5. 한약업사시험 합격통지서의 사본

6. 영업소의 소재지의 약도와 그 영업소의 구조개요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쿠폰 輸入에 관한 質疑

◦ 質疑要旨

- 貿易去來法上 輸入許可를 要하지 아니한 유네스코 쿠폰으로 医藥品을 輸入한 경우 藥事法에 의한 許可를 要하는 旨.

◦ 回答

- 許可 不要.

◦ 理由

- 藥事法 第34條는 貿易去來法에 對한 特別法 이므로 医藥品輸入에는 藥事法도 適用

※ 問係條文

藥事法 第34條

◦ 第3項

- 医藥品輸入은 保社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並함

◦ 第6項

- 貿易去來法上 第次後에 第3項에 의한 許可를 받도록 並함

● 유네스코活動에 관한法律[1963. 4. 27]
法律第1335號]

改正 1974. 12. 24 法律第2711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大韓民國은 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國際聯合의 基本精神에 입자하여 世界諸人民間의 無知와 誤解 및 羅困을 克服하여 人間의 마음속에 世界平和의 憶念을 마련하여 人類의 福利增進에 至大한 貢獻을 하 고 있음을 높이 評價하고 또한 大韓民國이 유네스코에 加盟함으로써 얻은 國際的地位에 鑑하여 이 崇高한 유네스코活動에 大韓民國政府와 國民이 積極적으로 協力하여 教育·科學 및 文化活動을 통하여 國際聯合憲章·유네스코憲章 및 世界人權宣言의 精神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法을 制定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유네스코活動"이라 함은 유네스코의 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活動을 말한다.

第2章 유네스코活動

第3條 (유네스코活動의 目標)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第10回 教育·學術 第6章 海外留學 및 유네스코活動 해외여행수첩유경

活動은 國際聯合의 基本精神에 입각하여 유네스코憲章과 유네스코總會의 決議에 따라 教育·科學 및 文化를 통하여 嵌新한 國際的知識와 公正한 國際的理諦를 全國民에게 普及시키는 동시에 活潑한 國際的交流를 통하여 國際間의 理解 및 親善과 協力を 促進함으로써 民族文化의 繁榮·世界平和의 穆寧 및 人類의 福利增進에 寄與함을 目標로 한다.

第4條 (유네스코活動에 관계 있는 國際機構) 大韓民國에 있어 서의 유네스코活動은 다음의 國際機構 및 團體와 密密히 協力下에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國際聯合
3. 國際聯合의 각 專門機構
4. 유네스코加盟國의 政府
5. 유네스코加盟國의 國內委員會
6. 유네스코活動에 관계 있는 國際團體
7. 유네스코活動에 관계 있는 유네스코加盟國내의 團體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유네스코活動)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活動을 하는 외에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에 積極 協助

1. 유네스코常任政府代表 및 유네스코總會에 派遣할 政府代表의 選定에 관한 事項
 2. 유네스코總會에 제출할 議案 및 同總會에서의 議事에 관한 事項
 3.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國際會議에의 參加 및 그 事後處理에 관한 事項
 4.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條約·協定 기타 國際協約의 結에 관한 事項
 5.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法令의 立案 및 豐算의 撫成에 대한 基本方針에 관한 事項
 6. 國家가 행하는 유네스코活動의 實施計劃에 관한 事項
 7.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國民的協力에 대한 基本方針에 관한 事項
 8. 地方自治團體 또는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에 대한 國家의 協力과 協助에 관한 事項
 9. 유네스코總會 기타 유네스코活動에 관계 있는 國際團體로부터의 援助事項에 대한 基本方針에 관한 事項
 10. 기타 필요한 事項
- ②委員會는 前項의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所管한다.

하여야 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이 경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에 대하여 財政的 援助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7條의 规定에 의한 유네스코韓國委員會와 密密한 連絡을 하여야 한다

第6條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은 第7條의 规定에 의한 유네스코韓國委員會의 指導下에 國內의 教育·科學 및 文化界의 實情을 充分히 考慮하여 유네스코憲章과 大韓民國의 유네스코活動의 基本方針 및 事業計劃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第3章 유네스코韓國委員會

第7條 (委員會의 設置) 유네스코憲章 第7條의 规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에 있어서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建議·企劃·調查·連絡 및 普及에 관한 事項을 수행하기 위하여 文教部長官掌下에 유네스코韓國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8條 (所管事項) ①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調查·審議하여 關係部長官에게 建議하거나 그 諮問에 응한다.

- (주 8) 1. 유네스코活動에 관계 있는 國內의 각 機關 및 囘體, 第4條의 國際機構 및 團體와의 連絡과 情報交換
2. 유네스코活動에 重要한 資料의 寶集과 調査·研究
3. 유네스코의 目的과 活動을 國내에 宣傳·普及하기 위한 事業의 推進, 出版物의 発刊 기타의 所管·普及活動
4.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間團體나個人에 대한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建議·指導와 協助
5. 유네스코會館의 管理運營 (新設 74-12-24 法2711)

第9條 (關係部長官과의 관계) ①委員會가 前條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關係部長官에게 建議하거나 그 諮問에 응하였을 경우에 그 關係部長官이 文教部長官이 아닌 때에는 그 결과를 文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對外事務를 處理함에 있어서 그 事務가 「本」의 對外政策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外務部長官과 密密히 連絡하여 協助를 받아야 하고 外務部長官은 委員會의 對外事務處理에 대하여 필요한 便宜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10條 (構成) ①委員會는 60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員長·當然副委員長 및 事務總主任 委員을 除外한다)은 다음 職號의 해당하는 者 중에서 第14條의 规定에 의한

執行委員會의 銓衡 및 委員會의 주권을 거쳐 文教部長官이 委屬한 者가 된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하는 者는 執行委員會의 銓衡 및 委員會의 주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改正 74-12-24 法2711>

1. 教育・科學・文化・弘報關係分野의 機關 또는 團體의 信任代表 33人이내.
2. 教育・科學・文化・弘報關係分野의 権或者 11人이내.
3. 國會議員중에서 國會議長이 指名한 者 6人이내.
4. 行政府 관계 公務員 4人이내.

③委員의 銓衡과 委屬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文教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委員長 및 副委員長) ①委員會에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5人을 둔다. <改正 74-12-24 法2711>

②委員長은 文教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文教部次官・外務部次官・文化公報部次官・科學技術處次官 및 委員중 總會에서選任된 者 1人이 된다. <改正 74-12-24 法2711>

③委員長은 會務를 管理하며 委員會를 代表하고,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2條 (委員의 任期) ①委員(委員長・當然職副委員長 및 事務

를 둔다. <改正 74-12-24 法2711>

②條 (總會) ①總會는 委員會 全員으로 構成한다.

②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여 定期總會는 年1回, 臨時總會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委員 10人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16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審議・決定한다.

1. 第8條에 規定된 事項.
2. 委員會의 豈算案과 事業計劃.
3. 委員會의 決算報告와 事業實績報告.
4. 選任하는 副委員長 및 執行委員會 委員의 選舉.
5. 執行委員會 또는 委員長이 諸議한 事項.
6.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17條 (總會의 定足數) ①總會의 議事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총석과 출석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②委員長은 總會의 議長이 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副委員長이 議長이 된다.

18條 (執行委員會) ①執行委員會는 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事務總長과 總會에서互選한 10人の 委員으로 成立된다.

第18編 教育・學術 第6章 海外留學 및 유네스코活動 유네스코活動에 관한法律

總長인 委員을 除外한다)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그러나, 再任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2711>

②委員에 無員이 생겼을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補闕委員을 委嘱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13條 (委員의 缺格事由등) ①마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產者와 限制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자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②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解職한다.

 1. 前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하였을 때.
 2. 機關이나 團體의 一定한 職位에 있음으로 인하여 就任된 者가 그 職에서 異났을 때.
 3. 心身의 障碍로 職務履行이 不可能하게 된 때.
 4. 職務上의 不正行爲 기타 義務違反으로 委員의 威信을 損傷한 때.

第14條 (委員會의 機關) 委員會에 總會・執行委員會・事務處

②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각자 執行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된다.

③執行委員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하여 定期會는 每3月에 1회, 臨時會는 執行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執行委員 5人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 執行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④執行委員長은 執行委員會의 副長이 되며 執行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執行委員長이 指名한 副委員長이 副長이 된다.

第19條 (執行委員會의 機能) 執行委員會는 다음 事項을審議・決定한다.

1. 總會에 附議한 議案의 作成에 관한 事項.
2. 總會에서 議決한 事項의 執行計劃과 그 實施의 程度에 관한 事項.
3.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4. 委員의 責任與衡에 관한 事項.
5.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第20條 (分科委員會) ①執行委員會에는 分科委員會을 수 있다.

②分科委員會의 相關과 業務에 관한 事項은 第26條의 規定에 依託 連絡機關으로 정한다.

第21條 (事務處) ①事務處는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한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과 기타 必要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執行委員會의 提請으로 委員長이 任命한다.

④事務總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그러나 再任할 수 있다.

⑤事務處 職員의 部酬 및 事務總長이외의 職員의 職格과 任免에 관한 事項은 第25條에 의한 運營規則으로 정한다.

第22條 (事務總長의 職務) ①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處理한다.

②事務總長은 委員會의 委員을 檢한다.

第23條 (豫算과 決算) 委員會의豫算是 文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決算是 文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24條 (보고) 文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務執行事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第25條 (運營規則) ①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則은 文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召開된 委員會의 委員의 銓衡은 教育・科

學・文化界의 人士중에서 文教部長官이 指名한 15人이내의 銓衡委員이 이를 행하고 이 法施行후 最初의 級會는 文教部長官이 召集한다.

③이 法施行 당시의 유네스코韓國委員會 事務局 職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한다.

④이 法施行 당시의 유네스코韓國委員會가 행한 모든 行爲는 이 法에 의한 委員會가 한 것으로 한다.

附 則 <74.12.24 法27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주 8)

문

교

부.

국고

1447-107

(170-3404)

1981. 4. 6.

주신 조건 사과부 청결

제목 의견 회선

1. 국고 쿠폰 1447-47532 (81. 4. 2)

2. 유네스코 쿠폰에 의하여 수입되는 진단용 시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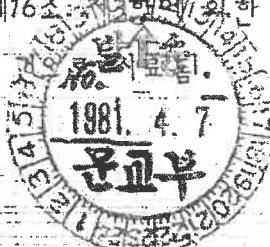
이 담부 의견을 회신하고자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부 종합약원에서 실험실 출품으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약은 무역기본법 제14조 및 등 시행령 제46조 제2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쿠폰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수입

자동 승인 품목의 수입도 쿠폰으로 가능하며

나. 유네스코 쿠폰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6조~~ ~~제16조~~ 의한 시약은 분석용시약, 진단용 시약 등 제반 시약을 포함하는 ~~수입 허가증~~ ~~수입 허가증~~

첨부 : 관계법령 발췌문 사본 1부. 꼴.

보건식회부		결재	약정부
접수일자	1981 4 9 시	지	
문서	26446	시 교 부 장	
부수	1	사	
정부출판국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부장관 강회전			

무역거래법

제 6 조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

1.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 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ただし, 허가는 승인된 시장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별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은 유효 기간이 권한 있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3.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유효 기간내에 시장장에게 그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유효 기간이 수출 대금을 최소 하거나 수입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수출입의 특례)

제 3조 및 제 6조 단서 제 13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의 기본 공고용 물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2. 외교관 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본인이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별도 송부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 45조 (수입의 특례) 법 제 1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다음 규칙과 같다.

1 - 23 항 상례

24. 국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윤리서류 그 속 그 속 그 고지서로 수출되는 바이트는 물품)

기안용지

호류기호
수급번호

수급 1117-

(전화번호) 70-3723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제작일자
1981. 1. 30.

제작년도
1981

보
조
기
관
차
관
국
장
당
당
관

기안책임자
행정사무관 강창우

수금당당
1981

경유
수신
김조
제목

문교부장관

발
수
신
성
부
처
체

통
체

유네스코주문 운영에 관한 의견조회

1. 의약품인 진단용 시약의 수출업무에 참고로자 다음 사항을 조회 하오니 귀경로 의견을 1981. 1. 6 까지 당부(약품 수급 담당관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관원

발송

145

자동송인품목으로 수입 가능하다면 그 관계법적근거:

2) 유네스코주문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100cm x 268cm (2급 인쇄용지 60g/m²)

"시약은 분식용 시약, 진단용 시약등 제반시약종류를 포함하는지 여부.

(제 2안)

수신 : 경기도 인천시 남구

(주) 이

제목 :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1. 귀하가 1981. 3. 21자 당부에 제출하신 의약품 수입허가 허득
여부 집의서는 관계기관과의 경로로 인하여 상당기간 처리지연되겠기 우선
통보합니다.

(제 3안)

수신 : 민원사무통 재관

제목 :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1. 접수번호 제129293호 (81. 3. 21)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수입허가 집의서는 관계기관과의 경로로 인하여 상당

기간 처리지연되겠기 우선 통보합니다. 끝.

하나국제주식회사

한시: 87-63-18

763-0531

1353. 3. 10.

주신도보국사

新編增補古今類要

제 8 조 제 1항에 따른 수령자는 그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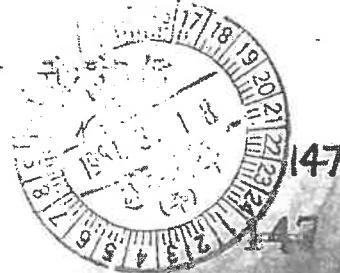
이것이 정부의 예산과 재정을 확장하는 저축의 저지수를 확보하고, 만약 우연히 저지를 있는

주소 : 이천시 남구

상호 : 츠 시호사

卷之三

卷之三



유비스코 쿠孚 輸入에 關於 質疑
— 保 社 部 —

一部 総合病院에서 臣藥品에 該當하는
診斷用 試藥의 輸入은 藥事法 第34條
中項 應是에 依한 輸入許可是必要로
하지만, 國內 오자商是 通하여 유비스코
쿠孚으로 輸入하는 경우 藥事法의 排除에
依한 合法的인 輸入部次에 該當하지与否.